

제 210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
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심사보고서**



2017. 9. 14.

**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70
----------	------

2017.9.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7.6.27.
- 나. 회부일자 : 2017.9.1.
- 다. 상정일자 : 2017.9.8.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고재풍 기획경제국장

나. 개정이유

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이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법 시행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 개정되고, 이에 따라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과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,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8조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로 개정
(안 제2조, 안 제7조)
-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5조를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43조로 개정
(안 제9조)
- 「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」 제62조의2를 「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」 제54조로 개정 (안 제2조)
-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정 관련 조문과 「국세징수법」 준용규정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개정된 가목~자목 내용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2017. 5. 18. ~ 6. 7.(결과 : 의견 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정수용)

- 본 개정조례(안)은 2017년 6월 2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- 본 조례(안)은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이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 징수법」으로 분법·시행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과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개정조례(안)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와 제7조의 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8조”를 “지방세기본법 제146조”로 개정하고,
 - 안 제9조의 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”를 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”로 개정하며,
 - 안 제2조의 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”를 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”로 개정하고,
 - 「지방세기본법」개정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제정 관련 조문과 「국세징수법」준용규정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개정된 가목~자목의 내용을 변경하며,
 - 안 제5조의2 포상금 지급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으로

- 본 개정조례(안)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조항을 법 원칙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